

DR 콩고 광물자원 투자환경 및 법제연구

김대중 연구위원
(포스코경영연구소)

1. 서론

콩고민주공화국(이하 DR콩고)은 1960년 6월 30일 벨기에 식민지에서 독립 후 군사 쿠데타와 독재, 내전으로 2006년 대선에서 조셉 카빌라(Joseph Kabila) 현 대통령이 집권하기까지 지속적인 정치 불안정과 혼란을 겪었다¹⁾. 오랜 전쟁으로 사회기반시설이 붕괴되고, 국민들의 생활여건은 강팍해 졌으며, 동부지역에는 아직까지 반정부세력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불안정요소까지 남아있다. UN이 매년 각국의 교육수준과 국민소득, 평균수명등을 조사해 인간개발 성취정도를 평가하는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에 의하면 DR콩고는 조사대상 국가 187개국 중 187위를 기록할 정도로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져 있다²⁾.

그러나 2003년 임시정부 수립이후 사회가 비교적 안정되기 시작했으며, 국제기구로부터의 원조지원, 광물자원 수출 등으로 매년 5~6% 정도의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그동안 GDP를 초과하는 막대한 외채로 성장을 위한 재원조달이 어려웠으나, 2010년 7월에는 IMF-Worldbank의 '과다외채빈곤국' 채무면제프로그램의 이행으로 약

1) 1965년 모부투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1997년 현재 대통령의 아버지인 로랑 카빌라가 암살하기까지 32년간 독재가 종식 되는 듯 싶었으나, 이후 2003년까지 6년간 내전이 지속되면서 약 400만명이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이 와중에 2001년 로랑 카빌리도 암살되었다. 2003년 과도정부의 구성 후 2006년 유엔평화유지군 지원하에 총선-대선이 실시되어 현 대통령이 집권하였으며, 2011년 11월 28일 대선에서도 재집권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11)

구분	평균수명(세)	문자해독률(%)	중등교육기관 입학률(%)	인당 GDP(US\$:PPP)
DR콩고	48.4	66.8	36.7	319
아프리카평균	54.4	61.6	35.3	2,181
세계평균	69.8	80.9	68.4	10,715

123억달러의 채무를 경감(총외채의 90%) 받는 등 재정여건도 호전되고 있다. DR콩고는 코발트, 구리, 원유, 다이아몬드 등 에너지광물자원이 전체 수출의 96.3%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향후 인프라 확충으로 자원개발이 가속화되고, 자원가격이 상승할 경우 더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카빌라정부는 2003년 6월 신�광업법을 제정하는 등 외국인 투자관련 규제를 정비하며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5년 이후 외국인 투자가 2007년 18.1억달러, 2008년 17.3억달러, 2009년 6.6억달러, 2010년에는 29.4억달러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외국인 투자분야는 주로 광물분야로 전세계 국가들은 자원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2008년 4월 22일 DR콩고 정부가 베이징에서 중국의 China Railway Group Limited, SINOHYDRO Corporation과 광산개발 조약 체결을 들 수 있다. 이 외에 미영일 및 콩고 컨소시엄은 Tenke-Fungurume 구리코발트 광구 개발, 이스라엘 ORICO社의 Orientale주 Banalia지역 70억달러 투자건 등 있다.

본 페이지는 향후 국내기업이 콩고에 진출하여 광산 및 인프라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참고가 될 목적으로 작성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DR콩고의 광업투자환경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제3장에서 DR콩고의 광업법과 광업관련 세제를 살펴본 뒤 제4장에서는 2008년 4월 중국과 체결한 협정서의 내용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2. DR콩고 광업투자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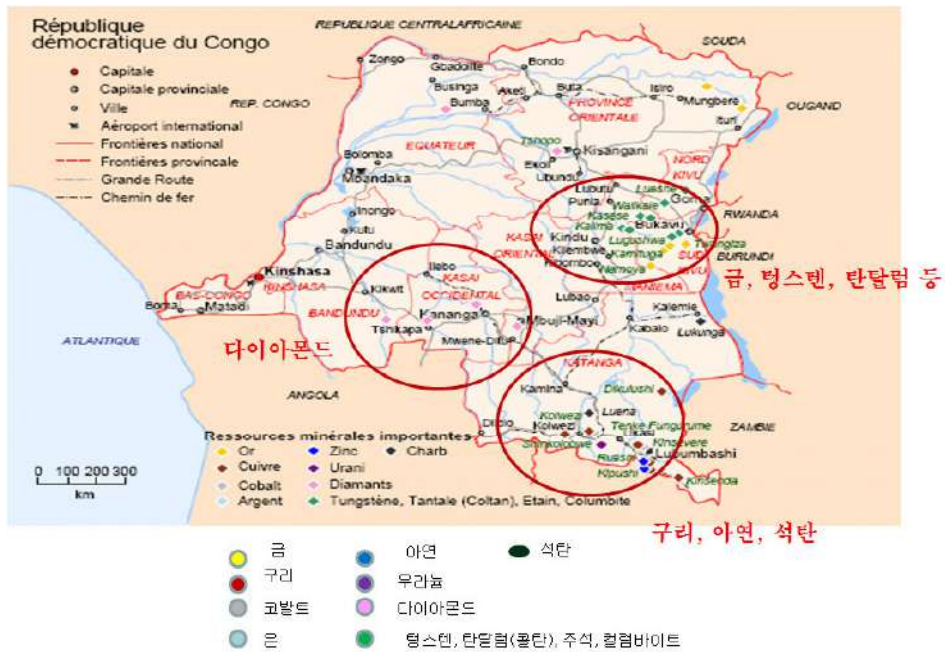
DR콩고의 광물자원은 남서지역의 카탕가(Katanga)주와 동부지역의 키부(Kibu)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현재 약 50여종의 광물이 매장되어있으며, 이중 구리는 전세계 매장량의 10%인 7,500만톤이 특히, Katanga주의 Fungurume, Kipushi, Kolwezi에 집중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olwezi지역은 2008년 4월 중국과의 투자협정에서

정한 구리광산개발지역이다. DR콩고의 동(원광)은 구리 함량이 높고 내부에 코발트, 아연, 게르마늄, 카드뮴, 몰리브덴, 은, 백광 등 기타 금속을 함유하고 있어 특히 관심이 높다. 동광에 포함되어 있는 코발트는 전세계 매장량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금은 우간다와 접하고 있는 동쪽 Ituri지방의 Kilo-Moto 금 벨트에 주로 부존하고 있으나, 반란 영향권내 지역으로 UN평화유지군이 지역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다.

<표1> 광물 매장량

No	광 물	추정매장량	No	광 물	추정매장량
1	동	7,500만톤	6	망간	700만톤
2	코발트	450만톤	7	리튬	3,100만톤
3	철광석	10억톤	8	니오븀	3,000만톤
4	주석	45만톤	9	금	600톤
5	아연	700만톤	10	다이아몬드	2억 캐럿

자료: 산업연구원, "아프리카 신흥전략시장의 자원부유 현황과 개발계획", 2009



<그림1> 광물 분포도

광물매장이 풍부하더라도 전력, 철도, 도로 등 인프라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 개발이 어렵다. DR콩고는 세계에서 가장 큰 INGA 폭포(높이

96m의 초당 42,500 m³의 폭포수)의 풍부한 수량을 이용한 수력발전시설이 INGA폭포 주변에 분포되어 있어 전력개발 잠재성이 매우 높다. 콩고강은 10만 MW의 전력을 개발할 수 있으며, 이중 45,000MW는 INGA댐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건설된 INGA 1 및 INGA 2 발전소의 발전용량은 각각 351MW, 1,424MW이나 발전시설이 노후화되어 이중 700MW만 발전 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송배전설비의 부족으로 DR콩고 주민의 7%만이 전기 공급혜택을 받고 있으며, 자본부족으로 자체 발전소 건설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최근 BHP빌리턴은 Bas Congo지역에 80만톤 규모의 알루미늄제련소를 세울 계획을 가지고, 이와 연계하여 Inga3 발전소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중이다. 발전소가 지어지면, 알루미늄제련소에서 소비된 나머지는 주변 지역에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도로 및 철도 등의 인프라는 광대한 국토에 비해 수송망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내전에 따른 도로폐해가 심각하며 국도와 지방도가 58,000km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지역별 철도의 궤간이 상이하고, 주요 교량들의 기능지하로 일부 지역의 경우 철도이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자원이 풍부한 Katanga지역을 중심으로 기존철도망이 집중되어 있어, Katanga지역의 광산개발을 진행할 경우, 남아공 Durbhan 등으로의 수송경로를 이용할 수 있다.

DR콩고의 광업에 외국인의 접근이 시작된 시점은 2003년 6월 신광업법 공포되고 나서부터이다. 동법은 외국 기업들과의 파트너계약을 가능하게 하는 등 광업을 외국인 투자자들에 개방하고, 투자자의 재산권을 강화하였다. 콩고정부는 광물자원을 활용한 재건사업과 경제개발 추진을 목적으로 외국인투자관련 규정 정비 및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에서 DR콩고의 광업법과 관련하여 광업권 종류와 부여절차, 그리고 광업관련 세금규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3. DR콩고 광업법 개요

콩고민주공화국은 1960년 독립 후 1966년, 1967년, 1981년에 광업법을 개정했으며, 2002년 세계은행의 지원 하에 '신광업법'을 제정, 2003년 6월 26일부터 시행 중이다. 세계은행은 DR콩고 이외에도 1995년까지 35개의 광업법을 개정을 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개정작업을 하였다.

2002년 신광업법 제정 당시 발표한 제정 동기(EXPOSE DES MOTIFS)에서 밝히고 있듯이³⁾, 그 주요 골자는 광업활동을 위한 기술과 자본 그리고 경영능력이 부족한 정부가 소유한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고, 민간기업과 외국인 투자자가 현지에서 광업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었다. 1992년 발간된 Worldbank의 "Strategy for mining in Africa"에서는 이 방법이 아프리카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장기적으로 세수(tax revenue) 증가와 경제상황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DR콩고의 경우, 1981년 광업법에서 민간법인은 국영기관이나 정부와의 별도 조약을 통해서만이 광업권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2002년 개정된 광업법은 그러한 조건 없이 민간법인이 단독으로도 탐사나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2002년 신광업법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DR콩고의 광업법은 총 17편 44장 344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 총칙에서는 용어의 정의와 광업법 기본원칙 및 적용범위, 그리고 국가의 역할과 관할권의 분배에 대해 다루고 있다. 광업법상에 나

3) A quelques exceptions près, les études statistiques ont démontré que les volumes d'investissements et de la production minière ont été plus importants dans la période allant de 1937 à 1966 comparativement à celle allant de 1967 à 1996, période régie par la loi minière de 1981..... Pour pallier cette insuffisance, le législateur a tenu à mettre sur pied une nouvelle législation incitative avec des procédures d'octroi des droits miniers ou de carrières objectives, rapides et transparentes dans laquelle sont organisés des régimes fiscal, douanier et de change. Ce qui constitue la raison d'être du présent Co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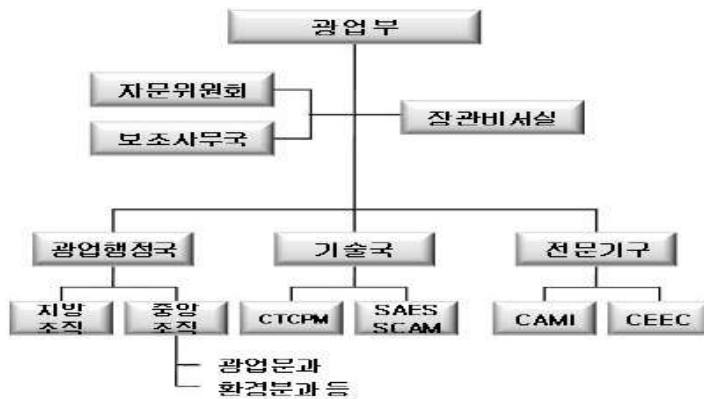
타난 정부조직과 권한을 간단히 살펴보면, 대통령은 광업관련 법규의 공포, 광물을 분류하는 역할을 한다. 과거에는 광업부장관이 체결한 계약에 대해 대통령의 법령공포 (l'Ordonnance du Chef de l'Etat)이 필요하였으나, 신광업법에서는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개혁은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효과가 있다. 광업부는 광업권의 부여와 말소, 지당권 설정 승인, 입찰광구와 보호지역의 선정 승인을 한다.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광업개발관리청(CAMI, Cadastre Miniere)의 창설이다. 광업개발관리청은 광업부 산하의 광업권을 관리하는 정부기관으로, 국가와 광물개발 투자자들간의 중개자 역할을 한다. 본청은 광업권의 부여절차를 관리하고 부여된 광업권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업무의 원칙으로 선원주의(first come, first served)⁴⁾를 채택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동일규정을 적용하여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광업권 표시 지도(CARTE)을 열람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개방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광업권 획득에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규정, 동일규정을 적용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신청서류를 검토하도록 하였다.

귀금속 반귀금속 감정센터 (CEEC)는 다이아몬드, 금 등 귀금속 감정 및 평가하는 기관이다. 세계 최대 다이아몬드 수요국인 미국은 킵벌리 프로세스를 통해 블리드(분쟁)다이아몬드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킵벌리 프로세스를 도입하였는데, 귀금속 및 반귀금속 수출 시 이 CEEC의 감정 후 킵벌리 프로세스 확인증 발급한다. 킵벌리 프로세스 도입의 목적은 세계시장의 다이아몬드 판매대금이 아프리카 국가들의 내전자금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이다⁵⁾. 킵벌리 프로세스 참가국에서는 원산지 표시 증명서를 다이아몬드와 함께 유통 법적으로 바이어들은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물건은 구매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4) 선원주의에서는 미래의 시세차익을 위해 투기적인 목적으로 점유를 한 뒤, 실제 현장에서는 탐사 및 채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위험도 존재하나, 정부에서 이를 잘 감독한다면 민간기업들의 실질적인 투자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다.

5) 참가국은 2002 11.5. 스위스 인터라켄 시에 모여 UN에서 후원하는 다이아몬드 원산지 증명서 발급 계획 결의 2년동안의 다각적 협상 끝에 40여개국 국가 정부가 2003.1 부터 이 프로세스의 규정을 지키기로 합의하였다.

조치 고시'를 개정하여 2003.1.1부터 시행하였다. 따라서 한국에서 다이아몬드 원석을 수출할 때는 지식경제부에 수출허가를 신청, 발급받은 증명서를 원석에 동봉해 선적해야 함. 또 수입할 때도 상대 회원국이 발행한 증명서가 있는 원석만 통관이 이뤄진다.



<그림2> 광업부 조직

광업법 제2편(Le Titre II)은 공통조항으로 광산과 채석장의 권리획득 자격, 채국의 한계 그리고 허가절차와 권리증서의 발행 등을 명시하고 있다. 광업권 허가절차는 광업부산하 광업관리청(CAMI)에 광업권 신청하면, 환경분과와 광업분과에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광업부장관이 광업권을 부여하고 관보에 게시함으로써 완료된다. 소요기간은 광업관리청의 접수서류 검토 10일, 광업부 광업분과의 기술심사 60일, 광업부 환경분과의 환경심사 60일, 광업부장관의 광업권부여 30일이다.

광업법 제3편은 광물탐사, 광산개발, 미광의 개발, 소규모 광산개발 면허의 유효범위와 허가조건, 만료와 갱신을 다룬다. 광업권의 종류에는 탐사권(Permis de Recherches), 채광권((Permis d'Exploitation), 미광개발권, 소규모 광산 개발권이 있다.

탐사권은 귀금속을 제외한 모든 광물에 대한 탐사권은 처음 5년동안

유효하고, 한 개의 권리당 400km²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 50개의 탐사권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필요한 재정적 기술적 자격조건을 보유하고 있으면 선원주의 원리에 의해 권리가 배정이 된다. 탐사권은 일정조건을 만족할 경우 5년 2회 갱신가능하다. 2007년 9월 기준으로 현재 4,353개의 탐사권 (각각 개발권 471개, 소규모(small scale) 광산개발권 59개)이 발효 중인데, 이 중 4,246개의 탐사권이 민간기업이 독립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권리이다. 탐사권 취득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재정적 능력을 증명해야 하나, 규약상으로는 미미한 수준이다. 더불어 권리를 보유한 회사는 탐사의 진행과정과 현재 수준을 광업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다. 광업부는 진행된 일과 안정성, 환경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사찰과 모니터 의무가 있다. Worldbank측의 추산에 의하면 민간기업들은 매년 약 6천만불가량을 탐사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채광권((Permis d'Exploitation)의 존속기간은 30년을 넘을 수 없으나 연장가능하며 매 연장시기마다 연장기간은 15년을 넘을 수 없다. 광업법 제 71조에 의하면 정부가 채굴회사의 주식 5%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CAMI에 의해서 471개의 채광권의 광업권 설정이 허가되었으며, 이 중 166개가 국영기업과 무관하게 단독으로 부여된 경우이다. 채광권은 탐사실적을 제출한 경우에 채광권 설정을 허가하며, 타당성조사결과(Feasibility study), 채굴계획, 환경영향평가결과(Environmental Impact study), 환경관리계획(Environmental Management Plan)을 제출하여야 한다. 채광권은 탐사권 결과에 따라 부여하기 때문에 채광권을 가지 자와 합작 등의 형태가 아니면 탐사권부터 신청하여야 한다.

2002년 광업법은 미광과 광물찌꺼기를 가공할 수 있는 미광개발권을 부여하고 있다. 소규모 광산 개발권의 경우에는 갱신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0년까지 부여한다.

<표2> 광업권의 종류

종류	유효기간	범위 및 발급조건부여
탐사권 (PR)	귀금속 4년, 2년 2회 갱신가능 그 외 5년, 5년 2회 갱신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리당 최대 400km² 및 회사그룹당 최대 50 건(20,000km²)까지 취득 가능 ○선원주의 ○최소 경제능력의 증거
채광권 (PE)	30년, 15년 단위로 반복적 갱신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상의 증명 ○개발 타당성 평가서 ○환경영향평가(EIS) 환경관리계획(EMPP)의 인가 ○주식의 5%를 국가에 이전하는 재정능력 증거 등 제출
인공적 광석채광권 (PER)	5년, 5년 단위로 반복적 갱신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영향평가(EIS) 환경관리계획(EMPP)의 인가 ○주식의 5%를 국가에 이전하는 재정능력 증거 등 제출 ○재원의 증명
소규모 광산개발권 (PEPM)	사안별 가변적 갱신을 포함하여 10년 미만 원칙 (광업부 장관 승인 시 예외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 국적을 지니고 있는 경우, 회사 자본의 25% 이상을 출자하는 한명 이상의 콩고인과 제휴하여 콩고회사 설립 ○환경영향평가(EIS)와 환경관리계획(EMPP) 인가 ○재정능력 증명

현재 DR콩고의 DR콩고에는 4370여건으로 추산되는 크고 작은 규모의 각종 광업권에 대한 허가가 발급돼 있다. 국영기업별로 사업대상 광종이 구분된다. 국영기업들은 국가의 광업권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어 외국기업들은 국영기업들과 JV형태의 합작경영을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⁶⁾. Gecamines를 제외한 나머지 국영기업은 현재 민영화 추진 중이므로 우리나라 기업도 참여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6) 주 DR콩고 김성철대사 “해외자원개발의 新시장 DR콩고”, 에너지타임즈 (2010.7.23)

<표3> 국영기업의 지분구조 및 광업권

기업명	소재지	사업대상광종	지분구조	광업권
Gecamines	Katanga	동, 코발트, 니켈, 귀금속	DR콩고 100%	42 PER 52 PE
MIBA	Kasai	다이아몬드, 금	Gecamines 80%, Sibeka(벨) 20%	65 PER 151 PE
SAKIMA	South Kivu, Maniema	금, 철, 주석	Banro(캐) 93% DR콩고 정부 7%	47 PE
OKIMO	Ituri, Mongwala, Watsa	금, 철, 주석		49PE
SODIMICO	Katanga (Musoshi, Kinsende, Kimpe)	동, 코발트, 니켈	DR콩고 정부 80% Sibeka (20%)	5PE
EMK-Mn	Kisenge	망간	DR콩고 정부	1PE

자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10)

광업법 제4편(Le titre IV)은 숙련공 광업생산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수작업의 의한 구리, 코발트, 다이아몬드, 금 및 칼탄 광물채굴이 크게 증가하면서 그 필요성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수많은 어린이들이 위험한 노동조건하에서 손으로 광물을 채굴하여, 이렇게 채굴된 구리와 채굴된 구리와 코발트는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수출되곤 하였다. 따라서 콩고 광업법은 숙련공 광업 구역의 창설과 허가, 숙련공 광업 생산품의 판매와 중개상인 카드 보유자의 의무, 수매업소의 허가신청 절차와 의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광업법 제5편은 채석장의 권리(Quarry rights)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6편은 보증(Securities)에 대해 다룬다. 광업권자에게 돈을 빌려준 기업의 출자자들이 그들의 채무자가 이후에 변제 불능상태가 되더라도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 개정 광업법에서 지당(mortgage)과 담보(pledge)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지당의 적용대상은 모든 종류의 광산 개발권과 상설 채석장의 개발허가, 광산개발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이 해당한다. 지당계약은 허가 소지자나 지당권자의 신청에 따라 광

업무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광업지적부에서 토지 대장에 기입하기 이전에 해당 허가증의 이면에 기재되어야 한다. 지불만기일까지 지당권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될 경우, 지당권자는 강제집행 절차를 청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해당 광산이나 채석장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담보는 광산에서 얻을 수 있는 상품에 적용이 된다.

광업법 제7편(Le titre VII)은 광업권의 입차(Leases)와 이전(Transfers)에 대해 다루고 있다, 입차의 신청절차, 임대인의 권리, 입차인의 책임 면제사항과 이전신청의 절차와 양도 수익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광업법 제8편은 광산 및 채석장 권리보유자의 의무사항으로 환경 보호, 문화유산보호, 안전과 건강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광업관련 세금 규정은 광업법의 제9장(Title IX)에 제시되어 있다. 이 규정에 나타난 탐사나 채굴과 관련된 세금이외에 각종 수수료 등 다양한 형태의 세규성 비용이 있으며, 광업부가 2007년 8월 9일 발행한 정보에 의하면 이러한 세규성 비용의 종류가 46가지에 이른다고 보고하고 있다. 광업법상에 나타난 DR콩고 투자시 고려해야 할 주요 세금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구광업법과 비교하여 로엔티의 병문화와 다양한 세제상의 우대조치가 마련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표4> 구광업법과 신광업법의 세금 및 수수료 비교

		구 광업법	신 광업법
면적세	탐사시기	- 없음	- 0.03\$ US/ha
	개발시기	- 없음	- 5\$ US/ha
로열티	철금속	- 명시하지 않음	- 0.5%
	비철금속	- 명시하지 않음	- 2%
	귀금속	- 명시하지 않음	- 2.5%
법인세		- 40%	- 30%
부가 가치세	가공업체 매도시	- 13%	- 0%
	국내판매	- 13%	- 10%
	국내생산 상품구입시	- 13%	- 3%
외국인 급여세		- 25%	- 10%
수입관세	담사단계	- ≦ 3%	- 2%
	개발단계	- ≦ 3%	- 5%
	광업활동 위한 연료, 소모품 등	- ≦ 3%	- 3%
수출관		- ≦ 3-10%	- 0%

로열티 (Royalties)는 철금속 0.5%, 비철금속 2%, 귀금속 2.5%, 귀석 4%, 산업용 광물 1% 등이며 보험, 수송비, 상업 경비 등을 제외한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40조). 면적세의 경우 광구의 지표면적에 걸리는 세금으로, 탐사의 경우 1헥타르당 US\$0.02~0.08, 채굴에 대해 1헥타르당 US\$5.00이다.

Otto (2003)에 의하면 광업활동을 수행할 때 기업에게 부과되는 기대되는 유효세율(Expected effective rate of taxation, ETR)을 추정한 결과 DR콩고의 경우 세전현금흐름의 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 광업국가 중에서 중상위에 위치한 수준으로 특별히 높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이는 기대 유효세율로서 실제로 지급해야 하는 세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유효세율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메카니즘을 보유하지 못한 기업일 경우 그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표5> 유효세율 비교

	DR콩고	캐나다	멕시코	인도네시아	남아공	필리핀	칠레	아리헨티나	서호주
Expted ETR	46%	64%	50%	49%	45%	45%	42%	40%	36%

자료: Jim Otto, Global Mining Tax Study, Colorado School of Mines, 2003

광업관련 세제를 담당하는 주요기관으로는 Congo 중앙은행(BCC) (정부수입을 국고금으로 맡아두는 정부의 은행), Office des Douanes et Accises(OFIDA) (관세, 수출세 그리고 수출관련 수수료 징수), Direction Général des Recettes Administratives, Domaines, et de Participations (DGRAD) (광산 로열티, 광업부의 각종 라이선스 및 허가권과 관련한 수수료 징수), Office Congolais de Controle(OCC) (수출입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이 있다.

광산로열티 등을 징수하는 DGRAD에 의하면 2006년 3200백만 USD의 로열티 수입과 1500백만 USD의 광구지표와 관련한 세금 수입을 창출해야 하였으나, 전체 1170만 USD 세입밖에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Worldbank 2007). 이러한 차이는 생산량의 미공개 또는 축소보고, 민수, 세원에 대한 기업의 불완전한 금융데이터, 부패 및

자료 위조 등이 원인으로 지적 될 수 있다.

광업권의 발행 및 등기 서비스 등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편이나 광업권자의 현장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평가 작업은 소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사찰에 책임이 있는 부서에서 이를 수행할 만한 인력이나 장비 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회사가 채굴계획에 따라 채굴을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많고, 광업권이 불법적으로 대여되거나 거래되는 경우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환경이나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특히 중소 광업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심각하다. 광물형태에 따라 광산개발도 산업적인 형태의 채굴보다는 수공업적인 형태의 채굴활동이 많아, 정부의 모니터링이 어려운 점도 있다. 또 다른 이슈는 광물원석에 대한 수출금지 조항이다. Katanga주지사는 2007년 4월 한 때, 원석수출을 막기 위해 국경을 폐쇄함으로써 잠비아의 제련 및 가공설비 활동이 타격을 받은 적이 있다.

광업법 제10편은 외환제도, 제11편은 토지 점유자들과의 관계, 제12편은 행정상 의무 불이행과 벌칙, 제13은 위반과 벌칙, 제14편은 상소권, 제15편은 기타조항들, 제16편은 임시조항들, 제17편은 폐지조항들에 대해 다루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조항들에 대한 분석은 생략한다. 다음으로 2008년 4월 체결된 중국과 콩고정부의 광업개발 및 인프라건설에 관한 합작 협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4. Case study : 콩고정부의 광업개발 및 인프라건설에 관한 합작협정 (2008년 4월)

DR콩고의 외국인 투자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인 60억달러 패키지 프로젝트(일명 Contrat sino-congolais)가 2008년 4월 체결 되었다⁷⁾. 이 프로젝트에는 중국 공기업 중국중티에주식유한회사(中國中鐵股份有限公司, CREC)사와 중국수이리수이덴건설그룹회사(中國水利水電建設集團公司, Sinohydro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협정에 명시된 대로 이 두 공

7) <http://www.digitalcongo.net/article/72656>

기업은 중국 수출입은행(EXIM Bank)이 제공하는 재원으로 인프라 시설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1단계 공사로 1)남-북 키부주를 연결하는 300km를 상회하는 Beni-Bunia간 도로공사, 2)약 200km의 Lubumbashi-Kasumbalesa간 도로공사, 3) 킨샤사내 2개 도로(boulevards du 30 Juin 및 Triomphal) 보수공사, 4)Boulevard du Tourisme의 개보수 공사가 이미 완공되었거나 완공단계에 있으며, 100여개 병상을 갖춘 50주년 병원(Hôpital du Cinquantaenaire)도 이미 완공되어, 중부아프리카에서 최대 병원으로 부상 중이다. 2단계 공사는 현재 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 결과가 중국정부에 제출되어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DR공고 당국의 요구에 따라 곧 일련의 공사가 이행될 예정이다.

인프라 투자에 대한 반대 압부로 중국 기업들은 구리채광을 위한 준비단계에 있으나, 기술적인 작업을 고려하면, 실제 채광은 약 3~4년 후에야 시작될 것이라고 주DR공고 중국대사 (Wu Zexian씨)는 평가하였다. 즉, 앞으로 3~4년 후 부터서야 중국기업들은 인프라에 투자한 금액들을 회수하기 시작할 것이다. 중국과 체결과 협정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표6> 중국-DR 콩고 인프라 건설 및 자원개발 협정 (2008.4.22) 개요

투자자	중국수출입은행 (China Exim Bank)
투자금액	92억불 (인프라건설 60억불), 자원개발(32억불)
투자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인트벤처사(Sicomines) 설립하고 이 회사의 지분은 DR공고 정부와 중국 측 각각 32%, 68% 점유 - 인프라건설 및 자원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은 중국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직접소요비용을 지불 받음, 단 지불과정에서 DR공고 정부가 공사 진척내용을 감독하여 그 지불에 간여함
투자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개발 결과의 배분은 다음의 3단계로 이뤄짐 1) 광물개발투자비용 상환단계: 광물개발 결과로 발생하는 전액은 이자 포함하여 광물채광 및 채광물의 산업적 처리에 투입된 투자금액의 상환에 사용 2) 인프라 건설 비용 상환 단계: 광물개발 결과로 발생하는 순이익의 66%는 인프라 건설비용 지불과 상환에 이용, 나머지 34%의 순이익

	<p>은 지분비율에 따라 쌍방이 분할</p> <p>3) 상업적 개발단계: 광물개발 결과인 배당금 분할은 JV자본금의 지분 비율로 분리. 이 단계 동안 JV는 세무 및 관세관련 콩고법률에 따름.</p>
<p>투자 대상처</p>	<p>1) 자원개발 : 구리광산 10.6백만톤, 코발트광산 62만톤</p> <p>2) 인프라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철로 개보수 : 2185Km(시공사 CREC) - 신규 철로 건설 : 1015Km(시공사 CREC) - 도로 포장공사 : 3400km(시공사 CREC의 자회사인 COVEC) - 보건시설 : 병원 31개 및 보건센터 145개 건설 - 교육시설 : 대학 2개 건설 - 기타 : 주택건설, 킨샤사 시 도로정비, 에너지 및 수도망 정비

4.1 법적인 성격

2008년 4월 양측이 사인한 협정서는 2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적, 광산프로젝트, 인프라투자프로젝트, 투자금 회수, DR콩고의 의무 사항과 보증, 중국기업의 보증, 당사자간의 의견서 교환, 갈등조정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협정에서 다루는 투자금액만도 총 60억달러 달하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당시 협정에 서명을 한 DR콩고의 인프라부문 장관인 Mr. Pierre LUMBI OKONGO은 2008년 5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DR콩고 헌법의 213조, 즉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비준 동의 없이 국제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를 국회와 상원에 통보한다>는 조항을 언급하며 협정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으나, 엄밀히 말하면 동조항은 국가간 또는 국가와 국제기구사이의 조약체결의 경우를 연두해 둔 것으로, DR콩고정부와 중국 민간기업사이에 체결된 본 협정에는 해당하지 않는 조항이라 볼 수 있다. 오히려 본 협정은 자국내법인 투자법, 외환거래법, 노동법, 광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다.

DR콩고의 투자법에 의하면 외국인 직접투자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자본금 구성에 있어서 외국의 참여지분이 최소 10%에 달하는 모든 투자”를 말하며, “DR콩고국적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DR콩고

국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본부가 DR콩고영토외의 지역에 위치해 있는 법인이 DR콩고내에 직접투자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DR콩고자금투자 32%, 중국투자 68%로 구성되어 있는 본 협정은 외국의 참여지분 10%이상에 해당하므로 외국인 직접투자에 해당한다.

본 협정에 서명한 중국측 인사는 China Railway Group과 SINOHYDRO CORPORATION의 법적인 책임자여서 협정체결에 문제가 없으나, DR콩고측에서는 인프라, 공공사업 및 재건부(ITPR) 장관이 정부를 대신하여 단독 서명함으로써, 광업부, 재무부 등 복수의 내각과 연결되어 있는 본 협정에 부서(副署)가 없었고, 대통령의 협정체결에 대한 위임도 없었으므로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도 국제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즉 국제법의 주체가 국제관계에서 정직하고 공평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국제관계의 기초를 이루는 원칙에 위배된다.

4.2 조건부 조항들과 불균형적인 요소

협정문에서는 DR콩고의 자연자원을 대가로 그 인프라 개발을 위해 쌍방의 권리와 의무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협정문을 읽다보면, 다양한 조건조항(conditionality)이 존재한다.

먼저 ‘어떤 조건이 만족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어떤 의무조항이 발생된다’와 같은 조건부 의무조항(condition suspensive)이 있다. 예를 들면, 협정문 제5조 1항은 중국측의 3억5천USD 권리금 지급은, 합작법인측의 사전타당성조사(prefeasibility study)에 대한 감사결과, 어떤 위장적인 요소가 없이 광업권이 유효하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GECAMINES측이 보유하고 있는 구리코발트 광산(Dikuluwe, Mashamba Ouest, Jonction D, Cuvette Duma, Cuvette Mashamba와 Synclinal Dikuluwe colline D; 구리 약 10.616.070톤, 코발트 626.619톤, 기타 광물 매장 추정)의 광업권을 합작법인에 양도한 후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협정문 제 6조 2항와 3항은 사전타당성 조사 그리고 타당성 조사결과 광업프로젝트의 수익률(IRR)이 적어도 19%이상

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조사결과는 합작법인의 이사회와 총회에 제출을 하고 최종적으로 중국정부와 DR콩고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어떤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권리가 자연 사라지는 조건부 해제조항(Condition resolutoire)이 있다. 예를 들면 13조 1항에서는 합작기업에 양도된 광업권이 결함이 있어 회복불가능할 경우 협정은 해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3조 3항에서는 사전타당성조사결과를 협정에 참여한 중국기업들 또는 Gecamines이 수락(4조에서 제시한 매장량 불충분등의 이유로)할 수 없을 때는 중국기업들은 인프라투자를 중단한다. 타당성 조사결과에서도 중국정부나 DR콩고정부에서 결과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광업권부여 또는 인프라투자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고 있다. 15조 1항에서는 중국정부로부터 협정에 대한 승인이 발생하고 12개월 이내에 DR콩고국회에서 협정사항 보장을 위한 재정, 관세 등에 대한 법률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 중국기업들은 협정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연에 의존하는 우성(偶成) 조건(condition casuelle)이다. 예를들면 제9조는 중국기업들은 합작기업을 통하여 인프라 프로젝트에 자금을 공여하되, 총금액은 광업개발결과에 의존한다고 하고 있다. 특히 2단계 인프라 공사의 시작 시점과 규모는 광산프로젝트의 수익률에 따라 양측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본 협정에서 조건부 의무조항이나 조건부 해제조항은 중국측에 유리한 조항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권리와 의무사항이 불균형적이라는 시각이 있다.

출자와 관련하여서는 DR콩고측의 출자는 Gecamines가 Katanga지역의 Kolwezi지역에 소유한 광업권 PE9681과 9682번이다. 이는 원물출자에 해당하며, 사전타당성조사와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최종 확정이 될 것이나, 만약 최종 매장량이 추정매장량보다 적을 때는 새로운 광권을 제공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DR콩고정부측에서 보증하는 내용은 광물매장과 광업권에 대한 보증(제5장 13조), 관세·세금·수출입에서의 모든 수수료··로열티 변제 등 공공부문에 적용되는 특별혜택을 제공(제14조)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정치리스크와 관련하여 별도 조항을

두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도 몰수, 국유화대상이 아니며, 1997년 중국과 DR콩고의 투자상호보장협정을 존중할 것을 규정(제15조) 하고 있다.

이와 반면에 중국측의 출자는 사실상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중국기업은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자금조달을 책임(제17조)지도록하고 있으며, 이 자금은 합작기업과 DR콩고정부가 광산개발이익을 이용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광산개발이익의 상환은 1단계에서 우선적으로 광물개발투자비용을 상환 한다. 이 단계 동안은 광물개발 결과로 발생하는 전액은 이자 포함하여 광물채광 및 채광口루의 산업적 처리에 투입된 투자금액의 상환에 사용된다. 2단계에서는 인프라건설비용 상환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합작기업의 광물 개발결과로 발생하는 순이익의 66%는 인프라건설비용 지불과 상환에 이용된다. 나머지 34%의 순이익은 지분비율에 따라 쌍방이 나뉘어간다. 제3단계는 광물개발 및 1단계 인프라개발을 위한 투자총액의 상환이후에 합작기업의 광산개발 결과인 배당금 분할은 자본금의 지분비율로 이루어진다(제12조). 인프라투자에 소요된 비용은 DR콩고측이 보유한 자원개발의 배당이익(DR콩고측 지분을 32%)에 의하여 조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1조).

여기에서 중국측 지분비율 68%가 어떻게 계산이 된 것인지 불분명하다. 중국측의 출자가 사실상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금조달에 대한 대가로 68%만큼의 지분을 확보한 것이다. 따라서 DR콩고측에서는 이를 불균형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그러나 DR콩고측의 보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광산채굴결과 실제 매장량에 대한 불확실성, 정치적 리스크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에 따르는 마땅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며, 위험수당으로 간주할 수 있다.

5. 결론

아프리카의 광업투자결정에는 광물부존량 뿐만 아니라 인프라 여건, 정치적 안정성, 현지 정부의 투자정책과 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우선 광물부존량과 관련하여서는 현지의 공기업들이 소유한 광업권이 라도 매장량은 예상되나, 타당성 조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지에서의 체류 등을 통한 별도 확인조사가 필요하다.

두 번째 DR콩고는 내전으로 인해 파괴된 인프라가 지역사회 단절, 경제통합의 약화, 외국인 투자활동 지하를 야기하는 등 경제발전의 가장 중요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콩고정부는 인프라 건설을 국가재건계획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두고 있으며, 풍부한 자원과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연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실행의 가장 좋은 사례는 상기한 중국 수출입은행의 자금지원으로 이루어진 중국-DR콩고 인프라건설 및 자원개발협약이다. 실제로 우리기업이 진출할 경우에도 콩고 측에서는 이러한 사업방식을 제안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중국과 같은 방식의 사업추진에 수출입은행 즉 중국정부측에서 모든 리스크를 안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한 경우로서,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투자리스크를 커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국이 1997년 DR콩고와 체결한 양자투자상호보장협정 등이 우선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다양한 리스크 헷징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민간기업은 반드시 사회간접자본 연계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광물자체의 사업성을 보고 진출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정치적 안정성이다. 2011년 대선에서 현대통령의 유입이 거의 확실시 되어 정치적 안정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 Worldbank 등의 조사에 의하면 Country Risk가 가장 큰 나라로 평가되기 때문에, 이의 개선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투자정책과 제도 측면이다. DR콩고는 인허가 장기간 소요 (예:건설허가 소요기간 DR콩고 322일 르완다 210일, 말라위 213일), 수출입에 소요되는 시간, 법집행 등에서 거의 최하위 수준이다. 감안하여야 할 부분이다.

자료

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콩고민주공화국 광업편람, 2010
2. World Bank, *Strategy for African Mining*, World Bank Technical Paper N° 181, Africa Technical Department Series, Mining Unit, Industry and Energy Div., Washington D.C., World Bank, 1992.
3. GRAMA, *La réforme des législations minières en afrique et le rôle des institutions financières internationales: La République Démocratique du Congo*, Marie Mazalto, 2004.
4. Bonnie Campbell, Revisiting the Reform Process of African Mining Regimes, *Canadian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30, nos. 1 - 2 (2010): 197 - 217
5. Jean-Luc Muke Minalumbu, *PRESENTATION DU CADRE LEGAL MINIER EN RDCONGO ET DE SES INNOVATIONS1*, 2007, mimeo

<별첨> 콩고 정부 광업개발 및 인프라건설에 관한 합작협정⁸⁾

콩고 정부&중국기업단체: 중국중티에주식유한회사(中國中鐵股份有限公司)
중국수이리수이덴건설그룹회사(中國水利水電建設集團公司)

2008년

제1장 목적

제1조 쌍방의 목적

1.1 쌍방은 하기 목적의 실현을 위해 본 협정을 체결한다.

1.1.1 콩고 정부: 국가의 대형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 확보

1.1.2 중국기업단체: 비철금속업에 투자

1.2 상기 목적의 달성을 위해 쌍방은 다음과 같은 합작방식을 정한다.

1.2.1 중국기업단체는 콩고 정부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 자금을 융자 및 조달하며, 상기 융자는 콩고광업총공사(이하 “GECAMINES”)가 개발하게 될 KOLWEZI 지역의 동-코발트 광산 채굴수익으로 상환한다. 구체적인 상환방식은 본 협정의 제4장에서 정한다.

1.2.2 중국기업단체는 ‘부록 A’에 명시된 광상의 개발 프로젝트(광업 프로젝트를)를 위해 자금을 조달하며, 상기 자금의 상환방식은 본 협정의 제4장에서 정한다.

8) 본 협정서의 번역은 저자의 감수하에 진행된 번역으로 혹 있을 수 있는 번역상의 오류는 저자 책임임

1.3 광업 프로젝트와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합하여 합작 프로젝트라 칭한다.

1.4 콩고 정부는 콩고국가광업공사와 자연인 1명(자연인은 GECAMINES의 관련 회사로 대체)으로 구성된 단체, 즉 상기 1.2.1 조항에서 언급된 GECAMINES 단체를 지정하여, 광업조인트벤처사 설립 및 광업 프로젝트 운영에 참여한다.

1.5 중국기업단체는 중국중티에홍콩유한회사(中國中鐵香港有限公司), 중국중티에화강광업주식유한회사(中國中鐵華"礦業股份有限公司), 중국중티에자원개발주식유한회사(中國中鐵資源開發股份有限公司), 중국수이덴건설그룹 국제공정유한회사(中國水電建設集團國際工程有限公司), 중국수이덴건설그룹 항만교통건설유한공사(中國水電建設集團港航建設有限公司) 등5개 회사로 구성된 연합체를 지칭하며, 광업 조인트벤처사의 설립 및 광업 프로젝트 운영에 참여한다.

제2조 합작협정의 취지

본 협정의 취지는 쌍방이 합작하게 될 프로젝트, 합작 프로젝트의 기본 방식 및 특수방식, 프로젝트 참여 각 주체의 권리와 의무를 정의하고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제2장 광업 프로젝트

제3조 합작방식 - 광업 조인트벤처사의 설립

3.1 쌍방은 광업 조인트벤처사를 설립하는 형식으로 합작하며, 콩고 정부는 GECAMINES에 위임하여 상기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GECAMINES는 본 협정의 조항에 따라 광권을 조인트벤처사에 양도한다.

3.2 상기 조인트벤처사는 콩고 정부의 현행 상업회사 설립 규정 및 관행에 따라 신설한다.

3.3 광업 조인트벤처사는 상업회사 규정에 따라 경영하며,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분은 광업 및 인프라 건설 자금으로 상환한다.

3.4 중국기업단체의 광업 및 인프라 건설 관련 투자수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은 광업 조인트벤처사의 출자비율을 중국기업단체가 68%, GECAMINES 단체가 32% 출자하는 것으로 협의한다.

제4조 광권의 양도

콩고 정부는 GECAMINES가 DIKULUWE, MASHAMBA 서부, JUNCTION D, DIMA 분지, MASHAMBA 분지, SYNCLINAL, DIKULUWE 고지 D 등 동-코발트 천연광의 광권 개발 증서를 광업 조인트벤처사에 양도한다. 추정되는 매장량은 동이 10,616,070톤이며, 그 중에서 이미 확인된 매장량은 동이 6,813,070톤, 코발트가 626,619톤에 달하며, 기타 특정가치가 있는 광물자원도 확인된 바이다. GECAMINES는 광권등기소에 등록된 광권 개발 증서(등록번호는 CAMI PE 9681 및 9682)를 보유하고 있다. 상기 증서에 명시된 광상은 콩고 정부 KATANGA성의 KOLWEZI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세한 위치는 본 협정의 부록B를 참조한다.

제5조 입회비 및 GECAMINES 기술개조에 대한 자금지원

5.1 상기 합작 프로젝트에서 중국 측은 하기 조건에 부합되는 상황에서 콩고 측에 3.5억 달러의 입회비를 지불한다.

- GECAMINES 단체와 중국기업단체가 체결한 “조인트벤처사 설립 협정”이 허가를 받고, 또한 예비 사업타당성 조사보고를 중국정부가

허가한다.

- 중국기업단체는 광권 및 광권 증서의 유효성과 합법성에 대한 정밀 심사(Due Diligence Investigation)를 통하여 명백한 혹은 은폐된 결점이 없음을 확인한다.

- GECAMINES는 본 협정의 제4조에 근거하여 동-코발트 천연광 및 기타 특정가치가 있는 광물자원의 광권 및 광권 증서를 상기 조인트벤처사에 양도한다.

5.2 그리고, 중국기업단체는 차관의 방식으로 GECAMINES에 5천만 달러의 용자를 제공하여, GECAMINES의 서부AO, 중앙 ACP, Lubumbashi LC 공장 보수에 사용하도록 한다. 설비의 구입은 우선적으로 중국기업에 기회를 제공한다. 보수공정은 콩고 하청기업들이 진행하며, 콩고 이외의 하청기업들이 참여할 경우 우선적으로 중국기업에 기회를 제공한다.

상기 자금지원은 광권의 양도와 관련되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상기 용자는 중국 정부가 상기 합작 프로젝트를 허가한 후 조달한다. 상기 용자는 GECAMINES의 서면요청 하에 현금 및 설비의 방식으로 조달된다.

제6조 예비 사업타당성 조사와 사업타당성 조사

6.1 광업 프로젝트의 예비 사업타당성 조사는 중국기업단체가 진행하며, 조사비용은 광업 조인트벤처사의 비용으로 기입한다.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는 GECAMINES와 중국기업단체의 고위층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는다.

6.2 그리고 광업 프로젝트의 사업타당성 조사는 광업 조인트벤처사가 진행하며, 조사 보고서는 조인트벤처사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동의

를 거쳐, 중국 정부와 콩고 정부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는다.

6.3 쌍방은 예비 사업타당성 조사와 사업타당성 조사가 중국기업단체의 광업 프로젝트 투자수익률이 최저 19% 이상에 달하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 합의한다.

제7조 광업 프로젝트의 시행

7.1 쌍방은 조인트벤처사 이익으로 광업 및 인프라 건설 투자자금을 상환한다는 목적의 실현을 위해, 콩고 정부와 중국기업단체가 조인트벤처사의 조속한 상업화 생산 개시를 적극 지원하여, 사업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생산을 시작할 수 있도록 협의한다. 상업화 생산 개시 후 첫 번째 해의 생산 목표는 동 20만 톤으로 정하며, 세 번째 해의 목표는 동 40만 톤으로 정한다.

7.2 광업 투자 금액과 투자 기한은 사업타당성 조사보고서에 근거하여 정한다.

제3장 인프라 프로젝트

제8조 인프라 건설

중국기업단체가 용자를 담당하는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의 상세 목록은 본 협정의 부록C를 참조한다. 부록C에 열거한 공정들의 선택과 시행은 쌍방의 협상으로 결정한다.

제9조 인프라 프로젝트의 시행

중국기업단체는 광업 조인트벤처사를 통하여 인프라 건설 수요 자금을 조달하며, 자금의 규모는 광업 프로젝트의 경영실적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인프라 건설은 2기에 걸쳐 시행한다.

9.1 제1기 인프라 공정

제1기 인프라 건설은 콩고 측의 시급한 인프라 공정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본 협정 체결 후, 콩고 측은 즉각 중국기업단체에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제1기 인프라 공정 제안목록을 제공한다. 중국기업단체 기술팀은 콩고 측이 제안에 근거하여 공정의 원가, 기술 및 시행계획을 작성한다. 인프라 공정의 시행은 사업타당성 조사보고서가 양국 정부의 허가를 받은 후 즉각 개시한다.

9.2 제2기 인프라 공정

제2기 인프라 공정의 작업개시 시간 및 규모는 쌍방이 광업 프로젝트의 수익상황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제2기 공정의 투자자금은 본 협정이 규정한 제3단계(제12조 참조)에 조인트벤처사가 정부에 납부해야 할 세금 및 관세로 상환한다.

9.3 비록 9.1 조항의 규정이 있지만, 본 협정의 제4조에 명시된 광권을 양도받은 조인트벤처사가 상기 광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중국기업단체가 콩고 정부의 가장 시급한 그리고 광산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공정들의 시행을 위해 용자를 조달한다. 상기 자금은 제1기 공정의 비용으로 기입되며, 조인트벤처사는 본 협정의 제4조에 근거하여 상환한다.

제10조 인프라 건설 계약

인프라 건설의 각 공정들은 발주자, 조인트벤처사, 중국기업단체와(혹은) 공정에 참여하는 중국기업단체 관련 회사들이 전문적인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한다. 상기 전문 계약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따른다.

10.1 인프라 건설 자금의 차관인은 조인트벤처사와(혹은) 중국기업이다. 조인트벤처사는 광업 프로젝트의 시행을 책임지며, 광업 투자 및 인프라 건설 투자의 상환 의무가 있다.

10.2 인프라 건설 공정의 차관은 조인트벤처사가 본 협정의 제4장 규정에 따라 상환한다.

10.3 인프라 프로젝트의 자금상환은 콩고 정부가 보증한다. 조인트벤처사의 수익이 부족하여 광업 투자와 인프라 투자 자금을 상환할 수 없을 경우, 콩고 정부가 중국기업단체에 기타 광권, 자원 혹은 기타 만족할 만한 형식으로 보상을 제공한다.

10.4 콩고 정부 인프라, 공공시설 및 재건부서는 본 협정이 규정하는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의 발주자다.

10.5 본 협정의 감리(설계회사)는 발주자가 지정한 기구가 담당한다.

10.6 인프라 건설 시공업체는 중국기업단체와(혹은) 중국기업단체가 지정하는 관련 회사이다.

10.7 조인트벤처사는 인프라 건설 공정의 감독과 관리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권한을 위임 받아 인프라 건설 자금의 운용, 조달 및 배정을 시행한다. 조인트벤처사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인프라 건설 시공업체의 공정결산보고서를 심사한 후, 인프라 시공 대금을 지급한다.

제11조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관련 특별 조항

11.1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의 대형 공공건설 성격과 대규모 고비용의 특징을 감안하고, 광업 개발 투자의 자금 회수기간이 길며, 광업투자 경영실적에 따른 콩고 정부의 국가수입으로 인프라 건설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길어, 쌍방은 조인트벤처사의 경영수익에서 발생하는 콩고 정부의 국가수입으로 인프라 건설 자금을 지불하는 것이 유일한 방식이 아님을 합의한다.

이를 위하여, 콩고 정부는 조인트벤처사에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중 가장 고가의 대규모 프로젝트의 자금지불에 대하여 기타 방식을 사용

하도록 제안할 것이다. 상기 기타 방식은 공정 발주자가 구매자신용대출로 자금을 지불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중국 금융기관을 이용한다면 중국기업단체는 발주자 혹은 콩고 정부를 위해 필요한 협조를 제공할 수 있다. 콩고 정부는 조속히 경제협력, 차관협정, 담보 등 관련 조치를 시행할 것을 보증한다.

11.2 쌍방은 광업 및 인프라 건설 투자 프로젝트에서 중국기업단체가 자재 및 서비스 공급에 있어 가급적이면 콩고 기업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에 합의한다.

그러나, 콩고 기업들이 국경 외 자재조달 및 서비스 제공 등 면에서 수준 미달일 경우, 중국기업단체는 가격경쟁력이 있는 중국 시장으로부터의 조달을 우선 고려한다.

제4장 투자자금의 상환

제12조 중국기업단체의 투자자금 상환

쌍방은 합작 프로젝트의 투자자금을 다음과 같이 3단계에 걸쳐 상환하기로 합의한다.

- 제1단계: 광업 투자자금 상환단계
- 제2단계: 제1기 인프라 건설 투자자금 상환단계
- 제3단계: 상업화 단계

광업 조인트벤처사는 하기 절차에 따라 중국기업단체가 광업 프로젝트와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투자한 모든 자금을 상환하기로 한다.

제1단계에서 조인트벤처사는 전부의 이윤을 중국기업단체가 광업 프로젝트에 투자한 자금 및 이자비용을 상환하는데 사용한다. 광업 투자총액의 30%는 주주 차관으로 이자비용이 없고, 나머지 70%는 6.1%의 연간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2단계에서 조인트벤처사는 이윤의 66%를 제1기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투자자금 및 이자비용을 상환하는데 사용한다. 여기에서 적용되는 연간 이자율은 LIBOR(6개월)+100BP이다. 이윤의 34%는 주주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당수익으로 배분한다. 제2단계에서 상환하는 자금총액은 30억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다.

제3단계에서 조인트벤처사는 전부의 이윤을 주주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당한다.

제2단계의 인프라 건설 투자자금 및 이자비용(연간 이자율은 LIBOR(6개월)+100BP)은 제3단계(상업화 단계)에서 조인트벤처사가 콩고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과 관세로 자금을 조달한다.

실제 은행 이자율과 조인트벤처사에 적용되는 이자율 간의 차이로 발생하는 차액은 중국기업단체가 부담한다.

제5장 콩고 정부의 약속과 보증

본 합작 프로젝트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하여, 콩고 정부는 특별히 중국기업단체에 하기 내용을 약속하고 보증한다.

제13조 광상(礦床) 및 광권에 대한 담보

13.1 콩고 정부는 본 프로젝트의 전체 진행기간 동안, 조인트벤처사에 양도한 광권에 병백한 혹은 은폐된 결점이 없음을 보증하며, 조인트벤처사가 합법적으로 상기 광권을 보유함을 보증한다. 중국기업단체는 중국기업 연합체에 위임하여 상기 광권의 유효성과 합법성에 대한 정밀심사(Due Diligence Investigation)를 진행하여, 병백한 혹은 은폐된 결점이 없을 경우에 광권의 양도를 인정한다. 그러나, 광권에 하나 혹은 여러 개의 병백한 혹은 은폐된 결점이 발견될 경우, GECAMINES는 조속한 수정 및 보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만약 상기 결점들이

수정될 수 없다면, 본 합작협정은 중단된다.

13.2. 콩고 정부는 양도된 광상이 본 협정 제4조에 명시된 매장량을 보유함을 보증한다. 만약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매장량이 본 협정 제4조에 명시된 매장량에 미치지 못할 경우, 콩고 정부는 조인트벤처사에 신규 광권을 양도하여 부족한 매장량을 보상할 것을 보증한다. 상기 경우, 매장량 보상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중국기업단체는 인프라 건설 투자를 중단한다.

13.3 광업 프로젝트 관련 사업타당성 및 수익성에 대한 담보

13.3.1 만약 예비 사업타당성 조사보고서가 중국기업단체와(혹은) GECAMINES의 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중국기업단체는 인프라 건설 투자를 중단한다. 쌍방은 협상을 통하여 해결책을 논의한다.

13.3.2 만약 예비 사업타당성 조사보고서가 중국 혹은 콩고 정부의 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쌍방은 협상을 통하여 보완조치를 취한다. 보완조치는 조인트벤처사에 신규 광권을 양도한다거나, 인프라 건설 투자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콩고 정부가 추가 양도하거나 조정하는 광문자원에 대하여, 조인트벤처사는 관련 광권 및 광권 증서의 합법성과 유효성에 대해 정밀심사(Due Diligence Investigation)를 진행하며, 사업타당성 조사를 진행한다.

신규로 양도된 광권에 대한 사업타당성 조사보고서가 중국 정부와 콩고 정부의 허가를 받기 전까지 인프라 건설 투자는 중단한다.

만약 콩고 측이 2차에 걸쳐 자원을 추가 양도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타당성 보고서가 중국 정부와 콩고 정부의 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본 협정은 중지된다. 조인트벤처사는 해산 및 청산 절차를 밟는다.

13.3.3 만약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중국기업단체의 투자수익률이 19%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콩고 정부는 중국기업단체의 투자수익률이 19%에 달하도록 합작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한다.

13.3.4 조인트벤처사가 설립 후 25년 내에, 광업 및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의 투자자금을 상환하지 못한다면, 콩고 정부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투자자금의 나머지 잔금을 상환한다.

제14조 콩고 정부가 부여하는 상업혜택, 세제혜택 및 기타 편의조건

14.1 기본 조항

14.1.1 본 합작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콩고 정부는 조인트벤처사에 콩고 현행 법률이 규정하는 모든 세금 및 관세 감면 혜택, 외환 관련 우대 혜택, 공공시장 외부 용자에 적용되는 각종 특별 혜택을 부여하기로 한다.

14.1.2 광업 조인트벤처사의 경영수익으로부터 과생되는 에 콩고 정부의 국가수입이 조속히 인프라 건설 자금의 지급 및 상환에 투입되도록, 콩고 정부는 중국기업단체에 공공시장 외부 용자에 적용되는 각종 특별 정책조건을 적용하기로 한다.

14.1.3 콩고 정부는 중국기업단체 혹은 조인트벤처사의 효율적인 자금 조달을 위해, 콩고 경내 및 경외의 은행에 자유롭게 외환 혹은 당해 국가 화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보증하고, 송금 및 수금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며 이와 관련한 은행의 세금과 비용을 면제한다.

14.1.4 양호한 광산 경영실적과 인프라 공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본 협정의 11.2 조항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전제하에, 광업 조인트벤처사는 자율적으로 콩고 경내 및 경외에서 설비, 장비, 기술 등의 공급 업체를 선정하며, 콩고의 관련 법규에 따라 적합한 인력을 고용한다.

14.2 광업 투자와 제1기 인프라 건설투자 상환단계의 특별 혜택

광업 투자와 제1기 인프라 건설투자 상환단계에서 콩고 정부는 조인트벤처사에 하기 특별혜택을 제공한다.

14.2.1 조인트벤처사의 광업 경영 및 인프라 건설 관련 각종 세금, 비용을 전부 면제한다. 이는 콩고 정부가 징수하는 모든 국가토지세(國地稅), 행정비용, 수출입 관련 관세 등을 포함한다. 상기 세금과 비용은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것, 내부 혹은 외부의 것 모두 면제한다.

14.2.2 광업 탐사허가증과 채굴허가증과 관련하여 신청, 수여, 명의변경, 양도 등의 각종 비용을 면제한다.

14.2.3 광산 채굴 관련 특허권 사용료를 면제한다.

14.2.4 세 단계 중 첫 두 단계에서, 조인트벤처사나 인프라 건설을 담당하는 중국기업들이 지불해야 할 모든 세금과 비용을 면제하며, 본 협정에 따라 인프라 건설의 비용으로 간주하여 기입한다.

14.3 콩고 정부가 부여하는 기타 편의조건

14.3.1 본 협정에 근거하여, 콩고 정부가 인프라 건설에 참여하는 기업 및 조인트벤처사의 직원들의 콩고행 비자발급과 노동허가 등에서 편의를 제공한다.

14.3.2 콩고 정부는 인프라 건설 및 광산 채굴 현장과 주변지역의 안전과 치안을 보증하고, 폭동, 폭력사건, 파업사태 등과 관련된 사안의 신속한 처리를 보증하여, 인프라 건설 및 광산 채굴이 최적의 조건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14.4 신규 입법된 법규

본 협정의 우대혜택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조인트벤처사와 합작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콩고가 미래에 시행하게 될, 혹은 기타 투자자와 협의하는 신규 우대조건의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불리한 조건을 초래할 수 있는 신규 입법되는 법규들은 조인트벤처사와 합작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15조 콩고 정부의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담보

15.1 상기 합작 프로젝트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콩고 정부는 중국정부가 허가한 후 12개월 내에 프로젝트 관련 세제, 해관 및 외환 정책 시행을 보장하는 의회의 법안 입법을 달성한다. 만약 의회에서 기간 내에 본 협정을 허가하지 않는다면, 중국기업단체는 본 협정을 시행하거나 중단시킬 권한을 가진다.

15.2 콩고 정부는 향후 조인트벤처사 및 그의 자산에 대하여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세금을 징수하지 않으며, 강제수용하여 국유화시키지 않는다.

15.3 콩고 정부는 중국 정부와 1997년 12월 18일 베이징에서 체결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콩고민주공화국 정부의 상호투자보호에 관한 협정""을 준수할 것을 보증한다.

15.4 중국기업단체 및 그 자회사 본 협정 하의 광업 프로젝트,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혹은 향후 추가 협의될 기타 합작 프로젝트에 출자하는 경우, 콩고 정부는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보증을 제공한다. 만약 다자간 투자보증기구(MIGA)에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현지국의 인가가 필요하다면 콩고 정부는 조속한 조치를 제공한다.

15.5 만약 중국기업단체 혹은 그 자회사가 본 협정의 합작 프로젝트 관련 보증을 신청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게 될 경우, 콩고 정부는 상기 보험금 지급을 인정하며 보증기관의 대위청구권을 인정한다. 그러나 상기 대위청구권은 중국기업단체 및 그 자회사가 소유하였던 권리나 청구권을 초과하지 않는다.

15.6 콩고 정부는 본 협정의 12조와 13조에 부합하는 조인트벤처사의 투자 안전과 완공된 인프라 건설의 공정대금 상환을 보증한다.

제16조 기타 약속과 보증

콩고 정부는 본 협정이 체결된 후 여러 개의 산업을 방라한 위원회(지도협조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약속한다. 상기 위원회는 1) 본 협정 및 관련된 기타 협의의 시행을 감독하고, 2) 상기 프로젝트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교통, 수도, 전력 등 면에서의 편의를 제공하며, 3) 정부 인프라 공정의 진행을 감독하고, 4) 중국 정부, 콩고 정부와 광업 조인트벤처사 간의 의사소통 채널을 담당한다. 상기 위원회는 통합기구로서 콩고민주공화국을 대표한다. 상기 위원회는 인프라 건설 공정 진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행정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조속한 조치를 취한다. 그리고 상기 위원회는 조인트벤처사와 정부기관 간의 관계 및 수속 등의 문제를 해결하며, 콩고와 중국기업단체가 협의한 기타 직책을 수행한다.

제6장 중국기업단체의 약속과 보증

제17조 중국기업단체의 약속과 보증

17.1 중국기업단체는 본 협정에 명시된 광업 프로젝트와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콩고 정부 및 GECAMINES와 성실히 협력할 것을 보증한다.

17.2 중국기업단체는 본 협정의 조건에 따라 프로젝트를 진행시킬 의무를 가진다. 중국기업단체는 주주 무이자 차관의 형식을 광업 조인트벤처사에 투자자금(광업 프로젝트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확인)을 제공하며, 그 중 30%는 광업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비용으로 제공한다.

17.3 중국기업단체는 콩고 GECAMINES가 광업 조인트벤처사에 출자하는 자금과, 조인트벤처사가 증자시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줄 것을 약속한다.

17.4 중국기업단체는 광업 조인트벤처사가 조속히 광업 및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중국기업단체는 또한 조인트벤처사의 채굴 원가를 절감하지 위해 동종 산업에서 사용되는 기술보다 비교우위가 있는 기술을 사용할 있도록 지원한다.

17.5 중국기업단체는 원가절감, 건설자금 절약, 디자인 참신함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 기술, 관리 등 년의 비교우위를 최대한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17.6 중국기업단체는 본 협정이 체결된 후 120일 이내에 중국 정부 관련 기관의 심사와 허가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7장 쌍방의 정기적 소통 시스템

제18조 정기적 협상

합작 프로젝트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중국기업단체의 대표와 콩고 정부의 대표는 매년 제1분기에 회동을 가진다. 회동 장소는 베이징이나 킨샤사로 정한다. 회동의 주제는 하기 내용을 포함한다.

- 본 협정의 집행 상황을 심사한다.
- 본 협정의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분쟁을 해결한다.
- 본 합작 프로젝트의 보다 나은 진행을 위해 제안을 한다.
- 본 합작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타 사안에 관하여 논의한다.

제8장 불가항력 및 그로 인한 분쟁의 해결

제19조 불가항력

19.1 모든 불가항력은 일반법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일방이 합리적인 대응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 및 극복이 불가능한, 모든 외부적 행위, 법률 정황 혹은 사건, 현상 혹은 상황을 불가항력으로 정의한다.

19.2 만약 불가항력이 발생하면, 피해를 입은 일방은 즉시 서면형식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알려야 한다. 만약 불가항력이 상기 통지한 날부터 60일간 지속되면, 쌍방은 협상으로 해결책을 논의한다.

19.3 불가항력이 지속되는 기간, 쌍방의 계약이행 의무는 중지된다.

19.4 본 합작 프로젝트의 성격을 감안하면, 강제징용, 국유화, 공고의 신규 법률 반포 및 법률의 개정 등은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불가항력이 될 수 없다.

제20조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

20.1 계약 쌍방은 본 협정의 해석 혹은 이행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우호적인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2 만약 6개월 이내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면, 계약의 임의 당사자 요청으로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의 중재법정에 제소하여 중재규칙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 중재에 사용되는 언어는 프랑스어와 중국어이며, 두 가지 언어가 상충될 경우 프랑스어를 우선 적용한다.

제21조 법률의 적용

본 협정은 행위지법(行爲地法)을 적용한다. 만약 이 기준에 따라 적용할 법률을 정할 수 없다면, 쌍방은 분쟁해결 관련 국제 상거래 관행 표준으로 적용할 법률을 정한다.

제9장 최종 조항

제22조 주소와 통지

모든 의견, 지시, 신청 혹은 본 협정의 조항들이 전달해야 할 기타 메시지 등은 서면 혹은 팩스의 형식으로 하기 주소로 전달한다.

콩고민주공화국 주소:

중국기업단체 주소:

중국중티에주식유한공사(中國中鐵股份有限公司) 대표이사
중국 베이징 핑타이구(豐台區) 려화츠남리(蓮花池南里) 26호
우편번호: 100055
전화: 00861051843471
팩스: 00861051841757

모든 통지, 지시, 신청 혹은 전달할 기타 메시지 등은 교부일에 수령된 것으로 인정된다. 만약 패스로 발송될 경우, 그 접수가 확인된 날의 다음 영업일에 수령된 것으로 인정된다. 모든 주소의 변경은 실제 변경 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제23조 충돌

만약 광업 조인트 벤처사의 설립 협정 및 정관이 본 협정과 충돌된다면, 본 협정의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제24조 수정

본 협정에 대한 수정은 쌍방이 수정보충 협정을 체결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5조 언어

본 협정은 프랑스어와 중국어로 작성되며, 이 두 가지 언어는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두 언어 버전의 해석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프랑스어 버전의 해석을 우선시 한다.

제26조 부록:

부록A: 광업 조인트벤처사에 양도하는 광권 리스트

부록B: 광상 지질조사 및 지리좌표

부록C: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항목 리스트

본 협정은 2008년 4월 22일 베이징에서 체결되었다. 협정 원본은 총 6부로 작성되었으며, 쌍방은 각 2부씩 보존한다.

콩고민주공화국

Mr. Pierre LUMBI OKONGO

중국중티에주식유한공사(中國中鐵股份有限公司)

Mr. 리장진(李長進)

POUR SINOHYDRO CORPORATION

Mr. 판지샹(范集湘)